

“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디지털화폐 법제화와 우리의 준비”

국제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이해

FATF 권고사항, UN 부패방지협약, UN 마약거래방지협약의 통합적 분석



자금세탁, 부패, 마약거래는 개별적인 위협이 아닌 서로 얹혀있는 문제입니다.
국제 사회는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규범을 바탕으로 한 통합된 글로벌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제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이해

FATF 권고사항, UN 부재방지협약, UN 마약거래방지협약의 통합적 분석



KoFIU



 **BOSTECH**
블록체인DS사업부

본부장 김 정현

복합적 위협과 통합된 글로벌 대응

“하나의 범죄 수익은 다른 범죄의 자금이 됩니다.”

상호 연결된 위협



마약거래
막대한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의 근원.

(출처:비엔나 협약 서문)

부패(Corruption)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법 집행을 약화시키며,
공공 자산을 잠식.

(출처:비엔나 협약 서문)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 수익의 출처를 위장하여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추가적인 범죄 활동을 조장.

(출처:FATF 서문)

글로벌 대응 체계의 3대 핵심



마약거래
막대한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의 근원.

(출처:비엔나 협약 서문)

부패(Corruption)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법 집행을 약화시키며,
공공 자산을 잠식.

(출처:비엔나 협약 서문)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 수익의 출처를 위장하여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추가적인 범죄 활동을 조장.

(출처:FATF 서문)

**UN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
(비엔나 협약, 1988)**
마약 관련 범죄 수익의 몰수 및
국제 공조의 기반 마련

**UN 부패방지협약
(UNCAC, 2004)**
부패 방지, 범죄화, 국제 공조
및 자산 회수에 대한 포괄적
체계 제시.

**FATF 국제기준(FATF
Recommendations, 2012 개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글로벌 표준.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5대 핵심 기둥

본 분석은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5개의 핵심 기능적 기둥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각 기둥은 세 가지 국제 규범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1. 범죄의 정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화하는 기반



2. 방어 체계 구축

금융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



3. 집행 권한 강화

당국의 조사, 감독 및
불법 자산 박탈 권한



4. 국제 공조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5. 자산 회수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
국가에 반환하는 최종 목표

정의

방어

조사집행

공조

회수

1 Pillar 1 | 범죄의 정의: 불법 행위의 법적 기반 마련



효과적인 대응의 첫 단계는 불법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규범은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 범죄와 후속 자금세탁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UN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UN 부패방지협약 (UNCAC)	FATF 권고사항 (FATF Recommendations)
<p>핵심 내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제조, 판매, 운송 등 광범위한 불법 거래 행위를 범죄로 규정 (제3조 1항).</p> <p>자금세탁: 마약 범죄로부터 파생된 재산임을 알면서 전환·이전하거나, 불법 출처를 은닉·위장하는 행위를 범죄화 (제3조 1(b)항).</p>	<p>핵심 내용: 공무원 뇌물수수(제15조), 공공재산 횡령(제17조), 영향력 거래(제18조), 재산국외도피 등 다양한 부패 행위를 범죄화.</p> <p>자금세탁: 협약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금세탁 범죄를 규정 (제23조).</p>	<p>핵심 내용: 비엔나 협약과 팔레르모 협약에 근거하여 자금세탁을 범죄화하고,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전제범죄를 포함하도록 요구 (권고 3).</p> <p>테러자금조달: 테러 행위 자체는 물론, 특정 테러 행위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테러 단체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범죄화 (권고 5).</p>

2

Pillar 2 | 방어 체계 구축: 금융 시스템의 악용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견고한 예방 체계는 금융 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입니다.

국제 규범은 리스크 평가부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명성 강화까지 다층적인 방어 조치를 요구합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법 (Risk-Based Approach - RBA)

국가 및 금융기관/DNFBP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스스로 식별, 평가, 이해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비례하는 완화 조치를 적용해야 함 (FATF 권고 1).

공공 부문 청렴성 강화 (Public Sector Integrity)

투명하고 경쟁에 기반한 공공 조달 시스템 수립 (UNCAC 제9조).
공무원의 행동 강령, 재산 신고 제도 등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청렴성, 정직성, 책임감 증진 (UNCAC 제8조, 제52조).

민간 부문 투명성 및 통제 (Private Sector Transparency & Controls)

민간 기업의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회계 통제, 회계 및 감사 기준 강화 (UNCAC 제12조).
금융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수립 및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일관된 AML/CFT 조치 적용 요구 (FATF 권고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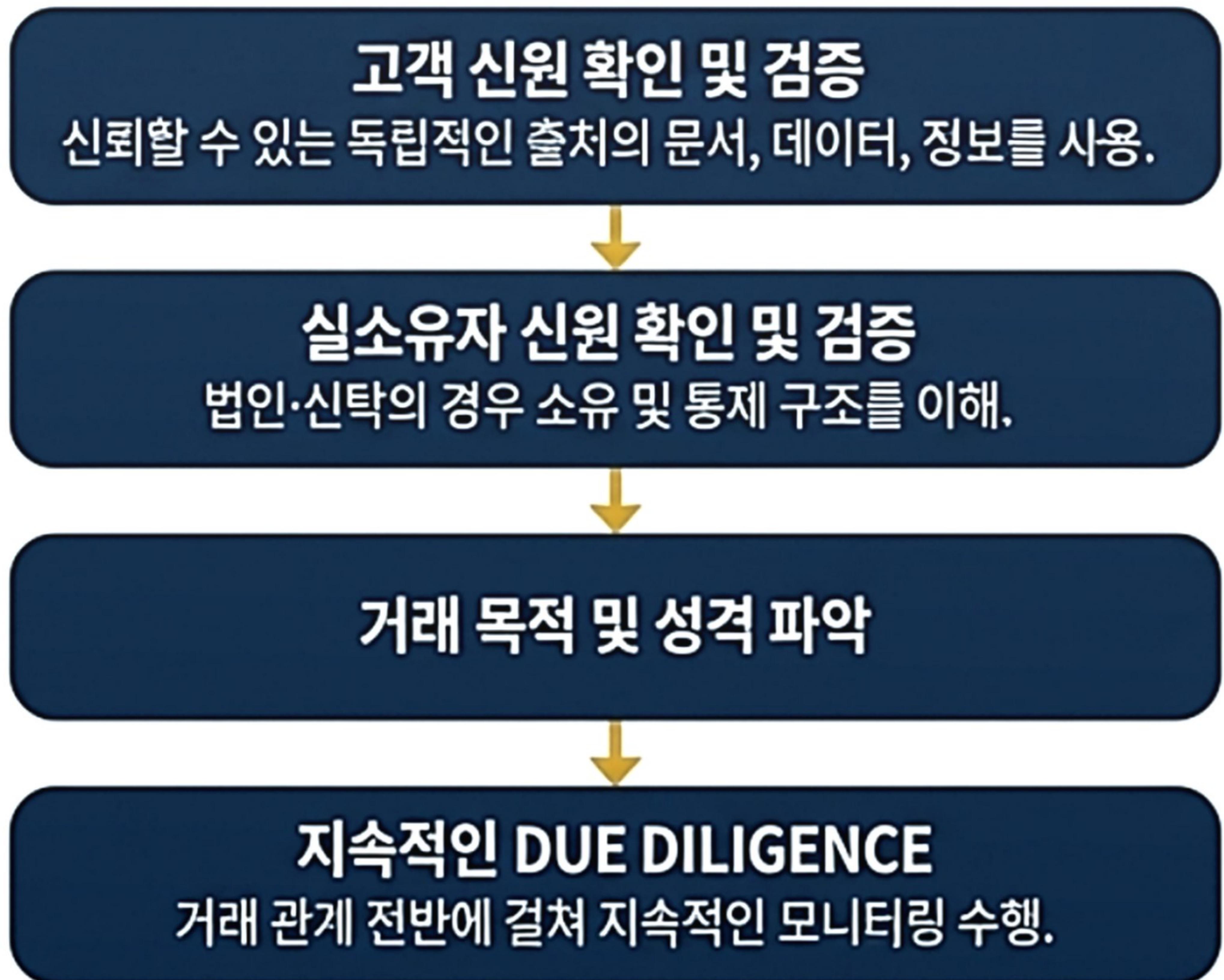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금융기관 및 DNFBP는 자금이 범죄 수익이거나 테러 자금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 (FATF 권고 20, 23, UNCAC 제14조).

Pillar 2 심층 분석 | 고객확인과 투명성: 누가 거래의 주체인가?

익명성은 금융 범죄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고객과 실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은 모든 예방 조치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The CDD Process



고객확인 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 CDD)

시기: 금융기관은 비즈니스 관계 수립 시, 일정 금액(USD/EUR 15,000) 이상 임시 거래 시, 자금세탁 의심 시 CDD를 수행해야 함 (FATF 권고 10). 이러한 의무는 카지노,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 전문직(DNFBPs)에도 적용됨 (FATF 권고 22).

법인 및 법률관계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

- FATF:** 각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 정보가 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권고 24). 무기명주식 발행을 금지.
- UNCAC:** 부패 방지를 위해 민간 법인의 투명성 증진 조치를 요구 (제12조 2(c)항).



효과적인 법 집행은 권한 있는 당국의 강력한 감독 및 조사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국제 규범은 당국에 금융기관 및 DNFBP를 감독하고, 정보를 요구하며,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제 및 감독 (Regulation and Supervision)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적절한 규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함. 감독 당국은 검사 수행, 정보 제출 강제, 면허 취소·정지 등 광범위한 징계 및 금융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야 함 (FATF 권고 26, 27).

DNFBP

카지노는 포괄적인 규제·감독 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기타 DNFBP는 리스크에 기반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을 받아야 함 (FATF 권고 28).

수사 당국 및 금융정보분석기구 (Law Enforcement & FIU)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각국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접수, 분석, 배포하는 국가 중앙 기관으로서 FIU를 설립해야 함 (FATF 권고 29, UNCAC 제14조, 58조).

수사 당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요 범죄 수익 관련 사건에서 적극적인 병행 금융 조사를 수행해야 함 (FATF 권고 30). 잠입수사, 통신감청, 컴퓨터 시스템 접근 등 광범위한 수사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FATF 권고 31, UNCAC 제50조).

전문 기관

부패 방지 법 집행을 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문 기관 또는 인력의 존재를 보장해야 함 (UNCAC 제36조).

Pillar 3 심층 분석 | 몰수 및 임시조치: 범죄 수익의 박탈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세 규범 모두 범죄 수익, 도구, 자산을 동결, 압류, 몰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권한을 요구합니다.



UN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범위: 마약 범죄로부터 파생된 수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었던 도구 등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 채택 의무 (제5조 1항).

임시조치: 최종 몰수를 목적으로 수익, 재산, 도구를 식별, 추적, 동결, 압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제5조 2항).



UN 부패방지협약 (UNCAC)

범위: 부패 범죄로부터 파생된 수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 범죄에 사용된 재산, 장비, 기타 도구의 몰수 (제31조 1항).

특징: 유죄 판결 없이 몰수를 허용하는 조치(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또는 범죄자가 재산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고려 (제31조 8항, 제54조 1(c) 1(c)항).



FATF 권고사항 (FATF Recommendations)

범위: 세탁된 재산, 자금세탁 또는 전제범죄로부터의 수익 및 도구,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거나 의도된 재산 등의 몰수를 위한 입법 조치를 요구 (권고 4).

임시조치: 재산의 처분·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동결 및 압류와 같은 임시 조치를 수행할 권한을 포함 (권고 4).

4 Pillar 4 | 국제 공조: 국경 없는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



자금은 국경을 쉽게 넘나듭니다.
따라서 금융범죄 수사 및 처벌, 자산 회수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공조의 기본 원칙

세 규범 모두 형사 문제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명시
(Vienna 제7조, UNCAC 제43조, FATF 권고 37)

은행 비밀주의(Bank Secrecy)는 국제 공조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UNCAC 제40조, 제46조 8항, Vienna 제5조 3항)

주요 공조 형태

- 사법 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 MLA):** 증거 수집, 서류 송달, 수색 및 압수, 자산 동결 및 추적 등 가장 광범위한 지원 제공
- 범죄인 인도(Extradition):**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로 간주
- 집행기관 간 협력(Law Enforcement Cooperation):**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위한 채널 구축, 합동 수사팀 구성, 연락관 파견 등(UNCAC 제48조, Vienna 제9조, FATF 권고 40)
-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당국의 감시 하에 국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여 관련자들을 식별하고 소탕하는 수사 기법(Vienna 제11조, UNCAC 제50조)



Pillar 4 심층 분석 | 사법 공조(MLA)와 범죄인 인도: 국제 공조의 핵심 도구

사법 공조는 국경 너머의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인 인도는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도피처를 없애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구분	사법 공조 (Mutual Legal Assistance)	범죄인 인도 (Extradition)
목적 (Purpose)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지원 (증인 신문, 기록 제출, 수색/압수, 자산 동결 등)	피의자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기소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함
UNCAC	가장 광범위한 사법 공조 제공 의무. 지원 가능한 11가지 유형 명시 (제46조).	협약상 범죄를 인도 대상 범죄로 간주.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부할 경우, 기소를 위해 자국 당국에 회부할 의무 ("aut dedere aut judicare") (제44조).
비엔나 협약	가장 광범위한 사법 공조 제공 의무. 증거 수집, 서류 송달, 수색/압수, 등 명시 (제7조).	협약상 범죄를 인도 대상 범죄로 간주. 기존 인도 조약이 없는 경우 본 협약을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제6조).
FATF	신속하고 건설적인 사법 공조 제공을 위한 명확한 절차 마련 요구. 자산 동결, 압수, 몰수 관련 지원 포함 (권고 37, 38).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관련 전제범죄를 인도 가능 범죄로 지정하도록 요구 (권고 39).

핵심 특징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 원칙이 요구되더라도,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법률이 범죄를 동일한 용어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 (UNCAC 제43조 2항).

5 Pillar 5 | 자산 회수: 범죄 수익 박탈을 넘어 정의의 회복으로



자산 회수는 **범죄 동기를 제거하고, 피해 국가가의 발전을 지원**하며, 부패는 결국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산 회수의 선구자, UNCAC (UNCAC as a Pioneer in Asset Recovery)

자산의 **반환**을 협약의 '**기본원칙**'으로 명시(제51조). 이는 국제법상 중요한 진전.



1. 예방 및 탐지



2. 직접 회수



3. 국제 공조를 통한 회수

고위험 계좌(정치적 주요인물(PEP) 등)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을 통해 불법 자금 이전을 **예방 및 탐지** (제52조). 이는 FATF 권고 12와 일치함.

피해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 (제53조)

타국 법원의 **몰수 명령**을 집행하거나, 자국 법원이 외국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 (제54조,55조)

자산의 반환 및 처분 (Return and Disposal of Assets)

- 공금 횡령 및 세탁된 공금의 경우, 요청국의 최종 판결에 따라 몰수된 재산을 요청국에 **반환**해야 함 (제57조 3(a)항).
- 기타 범죄 수익의 경우, 요청국의 이전 소유권이 입증되면 반환 (제57조 3(b)항).

타 규범의 역할

FATF & 비엔나 협약 : 강력한 몰수 및 국제 공조 규정(FATF 권고 4,38; Vienna 제5조)은 UNCAC의 자산 회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

상호 강화되는 통합 시스템: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작동 방식

5개의 기둥과 3개의 국제 규범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조치가 유기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강화 루프를 형성합니다. 예방 조치의 실패는 수사로 이어지고, 국제 공조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며, 이는 다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 정의가 기반을 제공 : 명확한 범죄 정의 없이는 예방도, 집행도 불가능
- 예방이 최전선 : 강력한 예방은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집행이 억제력 : 효과적인 수수와 몰수는 범죄의 매력을 감소시킴
- 공조가 범위 확장 : 국제 공조는 범죄자들의 도피처를 제거
- 회수가 정의 실현 : 자산 회수는 피해를 복구하고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사업자(DNFBP)를 위한 핵심 의무 요약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성공은民間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 이행에 달려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및 DNFBP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  **리스크 평가 및 관리 (Risk Assessment & Management)**
자사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통제, 절차를 수립 및 이행 (FATF 권고 1)
-  **고객확인(CDD) 및 실소유자(BO) 확인
(CDD & Beneficial Ownership)**
익명 계좌 개설 금지. 신규 고객, 특정 거래, 의심 상황 발생 시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 확인 및 검증 의무. (FATF 권고 10, 22)
정치적 주요인물(PEP)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수행.
(FATF 권고 12, UNCAC 제52조)
-  **기록 보관 (Record Keeping)**
CDD를 통해 얻은 모든 기록과 거래 관련 자료를 거래 관계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 (FATF 권고 11)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 STR)**
자금이 범죄 수익이거나 테러 자금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FIU에 보고
(FATF 권고 20, 23)
-  **내부통제 및 교육 (Internal Controls & Training)**
리스크에 부합하는 AML/CFT 내부통제 프로그램 수립,
독립적인 감사 기능,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FATF 권고 18, 23)
-  **비밀유지 및 정보유설 금지 (Confidentiality & No Tipping-Off)**
STR 제출 사실 및 관련 정보를 고객 등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금지. (FATF 권고 21)

미래를 향한 과제: 효과적인 이행과 진화하는 위협

국제 표준의 수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각국의 효과적인 이행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금융 범죄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에 달려있습니다.

핵심 과제 1: 효과적인 국가별 이행 (Effective National Implementation)



- **법제화:** 각국은 국제 규범을 자국 법률 및 행정 조치로 전환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음 (UNCAC 제65조)
- **자원 배분:** 규제 당국, FIU, 법 집행 기관에 적절한 훈련, 자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UNCAC 제36조)
- **상호 평가:** FATF는 회원국 및 FSRB(FATF-Style Regional Bodies)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함.

핵심 과제 2: 새로운 기술과 진화하는 위협 (New Technologies & Evolving Threats)



- **가상자산(Virtual Assets):**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해 AML/CFT 규제를 적용하고, 라이선스 또는 등록을 요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음 (FATF 권고 15).
- **지속적인 리스크 평가:** 국가와 금융기관은 신규 상품, 비즈니스 관행,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해야 함 (FATF 권고 15)

핵심 요약: 통합된 방어, 강화된 시스템

세 가지 핵심 테이크어웨이

- ① 1. 하나의 시스템 (**One System, Not Three Documents**): FATF 권고, UNCAC, 비엔나 협약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범죄 정의부터 예방, 집행, 공조, 자산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된 글로벌 방어 체계**를 형성합니다.
- ② 2. 예방의 중요성 (**Prevention is Paramount**): 강력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예방 조치, 특히 **투명한 고객확인(CDD)**과 **실소유자(BO) 정보 확보**는 전체 시스템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③ 3. 협력이 곧 힘 (**Cooperation is Strength**):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범죄의 특성상, **국내 기관 간의 협력**과 **국가 간의 국제 공조** 없이는 어떠한 규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통합된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이행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입니다.